

##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폐지(안)에대한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4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4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- 사하구 장림동 1081-8번지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996. 6. 8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, 신평·장림 공단내 피혁 가공 잔재물 및 오·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하여 비료·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,
- 폐기물재생시설의 불완전 및 사업성 결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인 (주)동아단백자원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되어 법원 경매 인수자인 (주)정광수산, (주)제이알램스킨에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설립코자 도시계획시설 폐지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장림동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폐지(도시계획안 참조)

### 3. 관계법령

- 도시계획법 제22조 5항
  -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 입안(폐지)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.

## 【都市計劃施設(廢棄物處理施設) 廢止(案)】

### I. 都市計劃施設 概要

- 위 치 : 사하구 장림동 1081-8번지
- 용도지역 : 전용공업지역
- 시 설 명 : 폐기물처리시설
- 면 적 : 1,452.2m<sup>2</sup>
- 신 청 자 : (주)정광수산, (주)제이 알랩스킨

### II. 廢止事由

- 사하구 장림동 1081-8번지의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은 장림동 피혁단지내 피혁 가공 잔재물 및 오·폐수 슬러지를 재활용코자 1996. 6. 8/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,
-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(주)동아단백자원의 부도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지된 상태이며, 법원경매 인수자가 수산물가공 공장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을 폐지코자 함.

### III. 都市計劃施設 廢止調書

구 분	번호	시 설 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13	폐 기 물 처리시설	일 반 폐기물	장림동 1081-8	1,452.2	감 1,452.2	0	1996. 6. 8	전 용 공업지역

## IV. 現 況

-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며, 장림동 피혁단지내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·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1995. 7. 29일 폐기물처리계획 적정통보를 득한 후 1996. 6. 8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.
-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 통보는 득하였으나, 폐기물관리법 제 26조 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는 득하지 못한 시설이며, 현재 장림공단내 폐기물 전량 울산광역시에서 처리 하고 있음.
- 재생시설의 불완전 및 사업성 결여로 사업시행자인 (주)동아단백자원의 부도 발생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오다 법원 경매 인수자인 (주)정광수산·(주)제이알램스킨에서 수산물가공공장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폐지 신청한 사항임.

## V. 供覽·公告 結果

- 공 고 일 : 2001. 10. 24(국제신문)  
2001. 10. 25(부산일보, 부산시보)
- 공람기간 : 2001. 10. 25~ 2001. 11. 10
- 공람장소 : 사하구청 도시개발과
- 공람기간내 제출 의견 : 없음.

# 도시계획(안) 개요

안 건 명	장림동 폐기물처리시설 폐지(안)		
신 청 자	(주)정광수산 이 교정 (주)제이알렘스킨 이 진록	위 치	사하구 장림동 1081-8번지
내 용	폐기물처리시설 폐지 A=1,452.2m'		
사 유	본 폐기물처리시설은 장림동 피혁단지내 폐기물을 재활용코자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 경매 인수자가 수산물가공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코자 함.		

